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4. 11.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8월 1일, 조경태 의원 등 11인

나. 회부일자: 2024년 8월 2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 9. 25.)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1차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2024. 11. 20.)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 폐기)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 11. 21.) 상정, 소위심사보

고, 축조심사,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

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조경태 의원)

현행법은 어선을 건조·개조하려는 자로 하여금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허가받지 아니한 어선을

건조·개조한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한편, 어선의 건조·개조를 받주받아 실제로 어선을 건조·개조하는 자가 허가사항과 다르게 어선을 건조·개조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해당 어선의 건조·개조 중지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벌금형에 처하도록 할 뿐, 허가받지 아니한 어선을 건조·개조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벌 근거를 두고 있지 않음.

그런데 어선을 불법으로 건조·개조하는 행위는 어선의 복원성 등에 영향을 미쳐 안전사고 발생과 직결되므로 엄격하게 규율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어선을 실제로 건조·개조하는 자의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어선의 건조·개조를 받주받아 어선을 건조·개조하는 자가 건조·개조허가를 받지 아니한 어선을 건조·개조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어선의 건조·개조 중지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명령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벌금형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어선의 불법 건조·개조 행위를 근절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 제10조제2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최선영)

현행법상 조선업체가 ‘허가사항을 위반’해 어선을 건조·개조한 경우에는 허가 취소(제10조제1항), 건조·개조의 중지 등 명령을 할 수 있으나(제10조제2항), ‘조선업체’가 허가 받지 않은 어선을 발주받아 건조·개조한 경우¹⁾에 대해서는 별다른 제재규정이 없어 조선업체의 무허가 어선 건조·개조행위에 대한 관리수단이 미흡한 측면이 있었음.

또한, 현행 법체계에서 어선 건조·개조에 대한 관리체계를 마련한 것은 안전상의 문제점이나 조업질서 교란을 방지하려는 것이나, 전국 각지에 영세업체 위주로 분산되어 있는 어선조선업체의 특성상 관리·감독이 어렵고 어선 불법건조·개조행위도 근절되지 않고 있어 어선 조선업체에 대한 관리수단 확충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개정안은 조선업체 등 어선의 건조·개조를 발주받아 건조·개조하려는 자가 허가를 받지 않은 어선을 건조·개조한 경우 허가권자가 건조·개조의 중지, 어선 또는 어선설비의 제거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²⁾에 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조선업체에 대한 관리상의 공백을 해소하고 무허가 어선 건조·개조 행위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짐.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1) 어선을 건조·개조하려는 자나 어선 건조·개조를 발주하려는 자가 어선 건조·개조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제43조의 벌칙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가능

2) 제46조(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10조에 따른 처분이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제22조 제1항을 위반하여 건조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어선을 건조한 자

5. 소위원회 심사내용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장 조경태 위원)

개정안의 내용을 대안에 반영하고, 이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